동두천시

시보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선람	기 관 의 장

제2022-6호

2022년 1월 12일(수)

차 례

공 고

○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공고 제2022-70호) ····· 2

동두천시 공고 제 2022 - 70호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2일

동 두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안

2. 제정이유

○ 상급기관(선관위, 행안부 및 경기도)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선거사무종사자에게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적시하고

○ 포상휴가 가능일수를 타 지자체 수준으로 확대하여, 업무유공 직원에게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포상휴가 부여 조건에 ‘선거사무’를 적시함

나. 포상휴가 부여 가능일수를 확대함(3일 → 5일)

4. 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 2. 4.(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장(자치행정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31) 860 - 2112

◯ 팩스번호 : 031) 860 - 2664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노소현	전화번호	860-211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지역”을 “선거사무 및 지역”으로, “3일”을 “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담당·팀장 직위·성명	총무팀장 강순남
	담 당 자 성명·전화	노소현 031-860-211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특별휴가) ① ~ ⑤ (생략) ⑥ 시장은 지역의 재해·재난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격무한 공무원과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14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선거사무 및 지역----------5일 ----------.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08호, 2021. 6.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2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7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 2 **현행조례**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1. 10. 18.]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220호, 2021. 10. 18., 전부개정]

경기도 동두천시(자치행정과), 031-860-2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동두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별표1의 선서문에 따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나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 또는 방호원은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등의 경계업무와 업무관련 연락, 문서처리 등을 하여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해직된 공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 준용한다.

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의 구분2에 따른 호봉 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국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5일 이상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구간 이내에서만 사용해야한다. 다만, 남은 휴가일수가 5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⑤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일이 확정된 날부터 30일내에서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역의 재해·재난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격무한 공무원과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1. 7. 1 조례 제 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16 조례 제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5. 4 조례 제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5. 6 조례 제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0. 24 조례 제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2. 29 조례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14 조례 제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8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2. 11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11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13 조례 제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 27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7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19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15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18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4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 이후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힌 것으로 본다.

부칙 <2002.4.20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0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8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조례 제12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 <별표 3> 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3. 15 조례 제15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 제23조제5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0.5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1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3. 조례 제 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5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종전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빼고 사용한다.

부칙 <2018. 4. 30. 조례 제19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20년 이상 부터 30년 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제20조제5호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5조제5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0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중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남은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에 따른다.

부칙 <2019. 3. 18. 조례 제2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1조제3호에 따른 자녀돌봄, 육아시간의 계산은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1. 10. 18. 조례 제2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6호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4항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붙임 3 **상급기관 협조 요청 공문(선관위, 행안부, 경기도)**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선거사무수행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부여 관련 조례 개정 협조요청

1. 선거관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투·개표 등 선거사무 수행을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특히 투표 및 개표사무는 공정성과 정확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무로 행정 경험과 공정한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확보할 필요성이 절실하나,

4. 법정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근무 및 휴일·야간근무 등이 불가피하여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무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등 투표 및 개표사무를 진행할 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허용'을 명문화하고 있는 바, 귀 시(의회)에서도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가 명시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 선거사무 수행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수신자 동두천시장(자치행정과장), 동두천시의회의장

전결 2022. 1. 11.

★선거계장 최지우 사무국장 최환준

협조자

시행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147 (2022. 1. 11.) 접수 자치행정과-999 (2022. 1. 11.)

우 11307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681 / http://

전화번호 (031)865-4228 팩스번호 (0505)058-2945 / / 대국민 공개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한국판뉴딜 지역균형뉴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실시 양대선거 관련 선거사무종사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등 복무사항 안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3297호(2021.11.23.) 관련입니다.

2. 2022년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및 휴무시간 보장 등 보상책 마련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업무종사 공무원에 대한 보상책 마련**
- 2022년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22.3.9.)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2.6.1.)관련, 선거사무 일정상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주말·공휴일 및 야간 근무등이 불가피하므로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복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투·개표사무 인력 지원 요청 시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휴무시간 보장 등 보상책 마련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공무원 출근 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등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치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자치분권과장),대구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인천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광주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대전광역시장(자치분권과장),울산광역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자치분권과장),경기도지사(자치행정과장),강원도지사(총무행정관),충청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충청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남도지사(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

주무관	송원주	지방행정사무관	전혜준	행정사무관	박지웅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전결 2021. 12. 1. 이용일

협조자

시행 선거의회자치법규과-3065 (2021. 12. 1.) 접수 자치행정과-20043 (2021. 12. 2.)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세종타워A 730호 / http://mois.go.kr

전화번호 044-205-3381 팩스번호 044-204-8946 / munich0914@mail.go.kr / 비공개(5)

경 기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양대선거 관련 선거사무종사 공무원 특별휴가 부여 등 안내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3065(2021.12.1.)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무 일정상 공무원의 주말·공휴일, 야간근무 등이 불가피하므로, 각 시군에서는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에 대해 **시군 복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 및 휴무시간**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투·개표사무 인력 지원 요청 시 원활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휴무시간 보장 등의 보상책 마련 검토

3.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행안부 문서번호 입력하여 다운로드)'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택근무' 또는 '공가' 등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안내 공문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지침 1부. 끝.

경 기 도 지 사

수신자 수원시장, 고양시장, 용인시장, 성남시장, 부천시장, 안산시장, 화성시장, 남양주시장, 안양시장, 평택시장, 의정부시장, 파주시장, 시흥시장, 김포시장, 광명시장, 광주시장, 군포시장, 이천시장, 오산시장, 하남시장, 양주시장, 구리시장, 안성시장, 포천시장, 의왕시장, 여주시장, 양평군수, 동두천시장, 과천시장, 가평군수, 연천군수

주무관 유두형 자치행정팀장 한병철 자치행정과장 전결 2021. 12. 2. 박근균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0112 (2021. 12. 2.) 접수 자치행정과-24906 (2021. 12. 3.)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08-4083 팩스번호 031-8008-7019 / oasis387@gg.go.kr / 비공개(5)

붙임 4 지자체 포상휴가 부여 가능일수 현황

□ 포상휴가 부여가능일수(5일 이상 17개, 3일 13개)

번호	구 분	특별휴가 일수	비 고
	평균	**4일**	
1	오산시	6	5일 이상 17개
2	의왕시	〃	
3	하남시	〃	
4	가평군	5	
5	고양시	〃	
6	광명시	〃	
7	부천시	〃	
8	성남시	〃	
9	수원시	〃	
10	안양시	〃	
11	양주시	〃	
12	용인시	〃	
13	의정부시	〃	
14	이천시	〃	
15	평택시	〃	
16	포천시	〃	
17	화성시	〃	
18	경기도청	**3**	**3일 13개**
19	과천시	〃	
20	광주시	〃	
21	김포시	〃	
22	남양주시	〃	
23	시흥시	〃	
24	안산시	〃	
25	안성시	〃	
26	양평군	〃	
27	여주시	〃	
28	연천군	〃	
29	파주시	〃	
30	동두천시	3	
31	군포시	2	
32	구리시	1	